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2
----------	-----

제출년월일 : 1999. 7.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농지법의 개정(1999. 3.31 법률 제5948호)으로 농지임대차 규정의 정비 등 불합리한 농지관련규제가 삭제됨에 따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사항 폐지

나.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함.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제8조중 제1호을 삭제하고 제2호내지 제9호를 제1호내지 제8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 차료상한에관한조례	제명 파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의 상한에 관한 심의 2 ~ 9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u>< 삭 제 ></u> 1 ~ 8(현행 제2호 내지 제9호와 같음)
제16조(임차료의 상한) 법 제25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	<u>< 삭 제 ></u>